



Brief

발행일_ 2024. 2.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차순도

보건 산업 브리프 Vol. 405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 주요 4개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국제의료시장분석팀 한미선, 이가영, 박진영

Contents

I. 개요

II. 비대면 진료 개념

III.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 및 정부 정책

IV. 전망 및 시사점





I 개요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유선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며 COVID-19 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음¹⁾
*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1,419만 명을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됨²⁾
- COVID-19 기간 동안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시스템은 비대면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으며, 각국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함³⁾⁴⁾
- '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COVID-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해제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상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국가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비대면 진료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⁵⁾
- 따라서 본 브리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세계 주요국 정부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II 비대면 진료 개념

■ 비대면 진료 정의⁶⁾⁷⁾

-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진단, 치료, 질병 및 부상의 예방, 연구와 평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이익 등을 위해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하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로 비대면 진료를 정의한 바 있음⁸⁾

1)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020.2.22.)

2)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2023.05.30.)

3) Healthcare IT News(Telemedicine M&A trends moving into 2024)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telemedicine-ma-trends-moving-2024

4) nuffieldtrust(Digital health care across the UK: where are we now?)https://www.nuffieldtrust.org.uk/resource/digital-health-care-across-the-uk-where-are-we-now

5) World Health Organization(Statement on the fifteenth meeting of the IHR (2005) Emergency Committee on the COVID-19 pandemic)https://www.who.int/news-room/item/05-05-2023-statement-on-the-fifteenth-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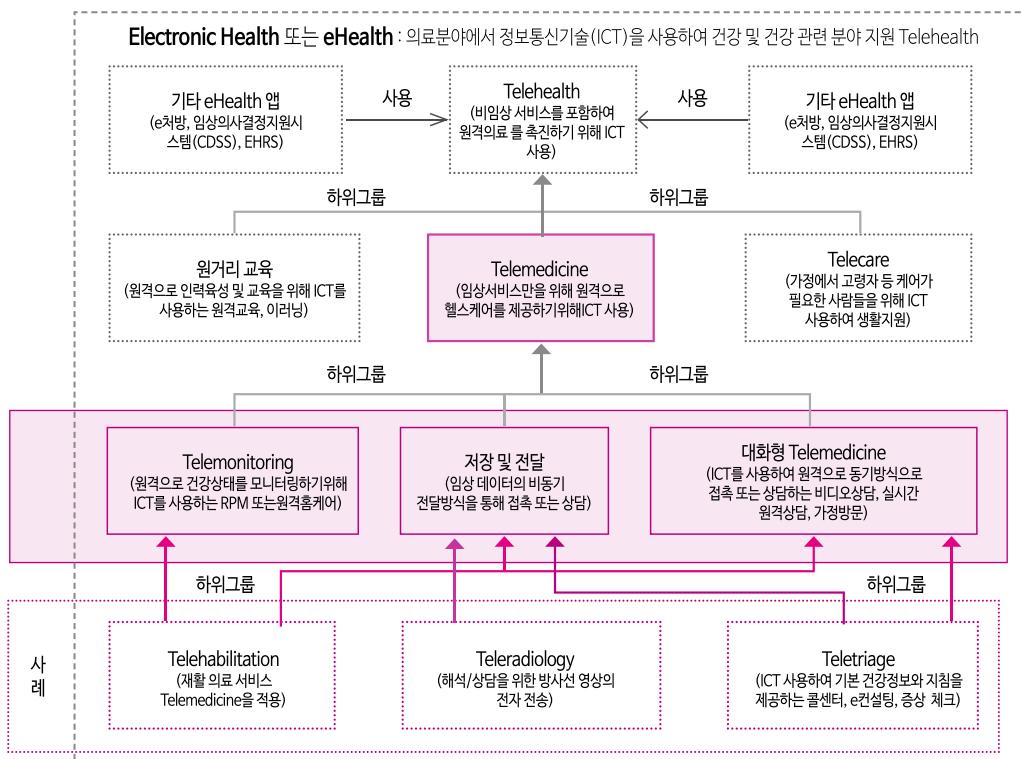
6)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2023.08.23.)

7) OEC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Telemedicine(2023.01.17.) https://www.oecd.org/publications/the-COVID-19-pandemic-and-the-future-of-telemedicine-ac8b0a27-en.htm

8) WHO,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report on the second global survey on eHealth 2009. 2010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4497/9789241564144_eng.pdf?sequence=1

- '20년 1월에 발간된 OECD 보고서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원거리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는 진료'를 의미함⁹⁾
- 비대면 진료는 크게 △원격 모니터링(Remote monitoring) △저장 및 전달(Store and Forward) △대화형[실시간] 비대면 진료(Interactive Telemedicine)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됨^{10) 11)}
 - (원격 모니터링) 모바일 장치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의료 검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의료종사자에게 결과를 전달함
 - (저장 및 전달) 원격 모니터링과 유사하지만, 시간에 덜 민감하고 전송과 응답 사이의 지연이 허용되는 임상 데이터에 사용됨
 - (대화형 또는 실시간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동기식 통신방식을 의미함
- 이외에도 Telehealth, E-Health(Electronic health), U-health(Ubiquitous health), M-health, Smart-health, Telemedicine 등의 유사 용어로 비대면 진료를 표현하기도 함¹²⁾

〈비대면 진료 및 광범위한 E-Health 생태계〉



출처 : OEC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Telemedicine, 2023.01.17.

-
- 9) Oliveira Hashiguchi, T. (2020),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e56ede7-en>.
 - 10) OEC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Telemedicine(2023.01.17.)<https://www.oecd.org/publications/the-COVID-19-pandemic-and-the-future-of-telemedicine-ac8b0a27-en.htm>
 - 11) OECD iLibrar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Telemedicine(2023.01.17.)https://www.oecd-ilibrary.org/sites/ac8b0a27-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ac8b0a27-en&_csp_=080f3f16780dd3bb4763f03688ea3f7b&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 12)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 2015.09.file:///C:/Users/82104/Desktop/2015_5-%EC%9B%90%EA%B2%A9%EC%9D%98%EB%A3%8C-%EC%A0%95%EC%B1%85%ED%98%84%ED%99%A9-%EB%B6%84%EC%84%9D-%EC%97%B0%EA%B5%AC_%EC%B5%9C%EC%A2%8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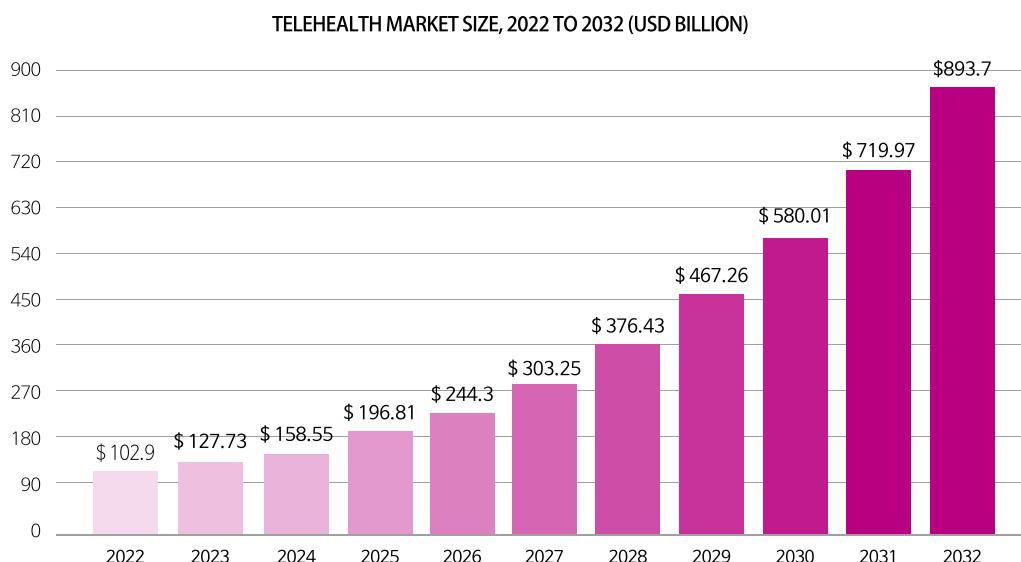
■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13) 14)}

- 비대면 진료는 COVID-19 이전에도 존재해왔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수요와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의료종사자의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비응급환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활용한 원격 실시간 비디오 통신 기능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 환자는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변경부터 보험 관련 문의까지,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음
 -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구현하여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비대면 진료 시장의 규모¹⁵⁾

- 시장조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2022년 1,029억 달러였으며, 2032년까지 8,93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3~2032년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CAGR)이 24.1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비대면진료 시장규모(2022~2032년)〉



출처 : Precedence Research,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telehealth-market>, 2023.01.31.

13) OECD, 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2023.01.20.)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he-future-of-telemedicine-after-COVID-19-d46e9a02/>

14) Healthcare Transformers, Top 10 healthcare trends expected to take 2023 by storm(2022.11.23.) <https://healthcaretransformers.com/healthcare-business/strategy-and-operations/top-10-healthcare-trends-for-2023/>

15) Precedence Research,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telehealth-market>, 2023.01.31.



III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 및 정부 정책

1. 미국

가. 비대면 진료 관련 현황

■ 미국의 비대면 진료 정의

- 미국은 원격의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법제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격의료의 세부 유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임¹⁶⁾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비대면 진료 정의에 따르면, 원격의료(Telehealth)에 비대면 진료(Telemedicine)를 포함하는 광의의 용어로 사용함¹⁷⁾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비교〉

구분	비대면 진료(Telemedicine)	원격의료(Telehealth)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 진단 및 치료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진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의사-환자 간의 관계를 넘어 더 넓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의미 •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

출처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elehealth, Telemedicine, and Telecare: What's What? <https://www.fcc.gov/general/telehealth-telemedicine-and-telecare-whats-what>

-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에서는 원격의료(telehealth)를 ‘먼 거리 소재 의료기관, 환자,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 공공보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함¹⁸⁾

16) The History o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https://telehealthresourcecenter.org/wp-content/uploads/2021/11/History_of_Telehealth.pdf

17) Telehealth, Telemedicine, and Telecare: What's What?,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www.fcc.gov/general/telehealth-telemedicine-and-telecare-whats-what>

18)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Telehealth programs [Internet]. Rockville (MD):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c2019, 2020.06.25 <https://www.hrsa.gov/rural-health/telehealth>



■ 미국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배경^{19) 20) 21) 22) 23) 24)}

- 미국은 도서산간지역 및 전문의 부족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함
 - 미국은 방대한 국토 특성에 따라 도시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교통약자의 의료서비스 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00년대 초기부터 라디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적용함²⁵⁾
 - 미국은 응급 및 재진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고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함²⁶⁾
 - '16년, 미국의 메릴랜드주 프레더릭메모리얼병원(Frederick Memorial Hospital)에서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Chronic Care Manage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을 시작하여 응급실 방문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입원율을 약 90% 줄이고 치료비용 또한 50% 이상 절감함²⁷⁾
 - '19년, 필라델피아 제퍼슨 건강병원(Jefferson Health Hospital)의 제프 커넥트(Jeff-Connect) 원격의료 플랫폼은 고가의 의료시설을 사용하는 약 650명의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여 약 \$1,50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함²⁸⁾
 - '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종합암지원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 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교통비, 치료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음²⁹⁾

19) 코로나19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의료정책연구소 KMA.

20) Telemedicine: Past, present, and future. <https://www.ccjm.org/content/85/12/938#ref-1>

21) THE DETERMINANTS OF TELEHEALTH ADOPTION IN US HOSPITALS, University of Virginia, Melody Chiang <https://economics.virginia.edu/sites/economics.virginia.edu/files/Chiang%2C%20Melody%20-%20The%20Determinants%20of%20Telehealth%20Adoption%20in%20US%20Hospitals.pdf>

22)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22.12

23) Arizona Telemedicine Program, 8 Reasons to Adopt Telehealth, 2016.3. <https://telemedicine.arizona.edu/blog/8-reasons-adopt-telehealth>

24) Understanding the Critical Advantages of Telehealth Adoption,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2023.11. <https://www.americanteamed.org/resources/understanding-the-critical-advantages-of-telehealth-adoption/>

25) History of Telemedicine. <https://evisit.com/resources/history-of-telemedicine>, Jama Network, 2023.11.

26) LinkedIn. Benefits of telemedicine and how it can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for patients in remote or underserved areas <https://www.linkedin.com/pulse/benefits-telemedicine-how-can-improve-access-healthcare-services/>

27) Brookings, Removing regulatory barriers to telehealth before and after COVID- 19, 2020.05.06.

28) Virtual health care grows, but usage is uneven and some patients, physicians are slow to adopt, Indianapolis Business Journal, 20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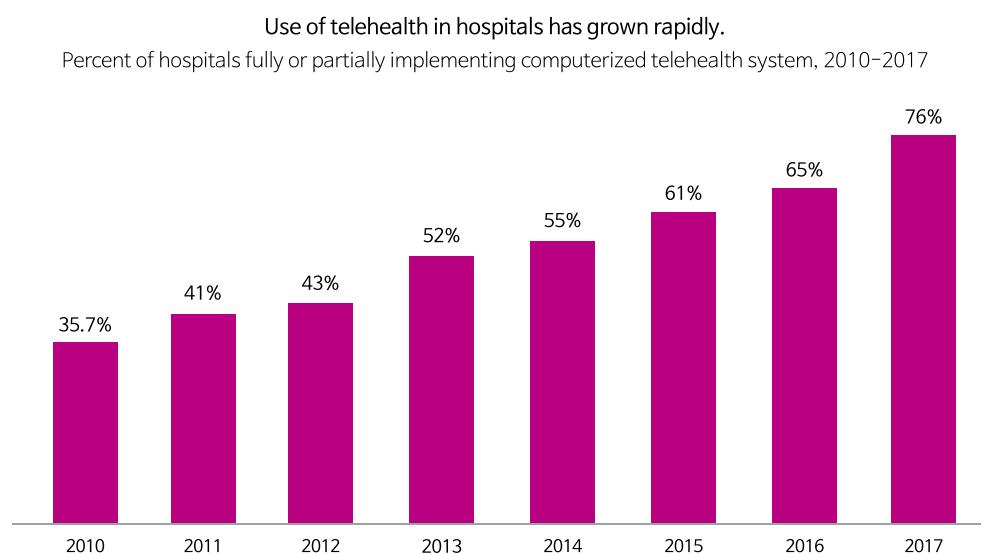
29) Estimated Indirect Cost Savings of Using Telehealth Among Nonelderly Patients With Cancer.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800164>



■ 미국의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 (30)(31)(32)

-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률은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함
 - 팬데믹 초기 밀접 접촉에 따른 전염을 줄이기 위해, '20년 4월 월간 비대면 진료 이용 횟수가 '20년 2월 대비 78배 증가함⁽³³⁾
 - '21년, 미국 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HA)의 연간 조사(Annual Survey)에 따르면, 전체 또는 일부 컴퓨터화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의 비율은 '10년 35%에서 '17년 76%로 증가함⁽³⁴⁾

〈미국 비대면 진료 도입 병원 추이〉



출처 : Fact Sheet: Telehealth,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19.02

-
- 30) Definitive Healthcare, Top telehealth companies by market share(2023.01.16.)<https://www.definitivehc.com/resources/healthcare-insights/top-telehealth-companies-market-share>
- 31)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Updated National Survey Trends in Telehealth Utilization and Modality (2021-2022))<https://aspe.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7d6b4989431f4c70144f209622975116/household-pulse-survey-telehealth-covid-1b.pdf>
- 32) PR Newswire(Telehealth Establishes Permanent Role in U.S. Healthcare Delivery According to New Chartis Research)<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elehealth-establishes-permanent-role-in-us-healthcare-delivery-according-to-new-charts-research-301670735.html>
- 33) McKinsey&Company, Telehealth: A quarter-tril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2021.07.09.)<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our-insights/telehealth-a-quarter-trillion-dollar-post-COVID-19-reality>
- 34) University of Virginia(THE DETERMINANTS OF TELEHEALTH ADOPTION IN US HOSPITALS, Melody Chiang)<https://economics.virginia.edu/sites/economics.virginia.edu/files/Chiang%2C%20Melody%20-%20The%20Determinants%20of%20Telehealth%20Adoption%20in%20US%20Hospitals.pdf>



● '15년, 미국 미주리주(State of Missouri) 세인트루이스에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 센터가 설립됨^{35) 36)}

- 지역병원인 머시(Mercy)의 가상진료센터(Virtual Care Center)는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병원으로, 입원 시설은 물론 외래환자도 없어 '병상이 없는 병원(hospital without beds)'으로도 불림
- 머시는 '19년 12월 농업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 병원에 원격 지원 기기를 설치하고, 가상진료 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환자를 원격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함
- '19년 기준 약 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COVID-19 대유행 이후 '21년 80만 건으로 증가함³⁷⁾
- 머시 산하에 있는 기존의 병원은 아칸소주, 캔자스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하며, 전체 환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 거주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대도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격차를 줄임

〈머시의 가상진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vI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미(全美) 최대 규모의 원격 집중치료실이며, 5개 주(州)에 있는 30개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와 더불어 머시 버추얼 케어센터의 의사와 간호사가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를 이중으로 관리함
vStro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응급진료 팀에는 대부분 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병원에 응급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경우, 쌍방향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즉시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vHospitali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해 24시간 체제로 원내 환자의 진찰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함
v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시에서는 3,800명 이상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한 의료 제공을 통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출처 : JETRO, 米国で遠隔医療などのデジタルヘルス市場が成長, 2022.11.29.

35) JETRO, 米国で遠隔医療などのデジタルヘルス市場が成長(2022.11.29.)<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2/60886751fce8949a.html>

36) Healthcare IT News(Mercy Virtual Care Center: A deep dive into a virtual hospital)<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mercy-virtual-care-center-deep-dive-virtual-hospital>

37) PR Newswire(Mercy Awarded \$2.2 Million to Expand Virtual Care for Patients)<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mercy-awarded-2-2-million-to-expand-virtual-care-for-patients-301461039.html>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평가차관실(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SPE)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활용 및 양상에 관한 전수조사(Updated National Survey Trends in Telehealth Utilization and Modality)'에 따르면, '22년 8월 기준 '최근 4주 간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성인 응답자 기준 전체 1,180,248명의 22.5%에 달함³⁸⁾
 - 비대면 진료 관련 보험 이용률은 메디케이드(Medicaid, 28.3%), 메디케어(Medicare, 26.8%), 민간 개인보험(Private, 20.2%), 기타 보험(24.4%), 무보험(9.4) 순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는 서부(West, 24.9%)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북동(Northeast, 23.3%), 남부(South, 21.3%), 중서부(Midwest, 18.7%) 순으로 나타남

〈미국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 추이〉

DATES	Adults	Children
Apr 14 - Apr 26, 2021	26.9	24.1
Apr 28 - May 10, 2021	26.1	23.4
May 12 - May 24, 2021	25.9	23.2
May 26 - Jun 7, 2021	25.3	22.7
Jun 9 - Jun 21, 2021	24.5	22.6
Jun 23 - Jul 5, 2021	24.6	22.1
Jul 21 - Aug 2, 2021	20.6	16.2
Aug 4 - Aug 16, 2021	20.2	15.3
Aug 18 - Aug 30, 2021	20.5	15.8
Sep 1 - Sep 13, 2021	20.6	16.5
Sep 15 - Sep 27, 2021	20.9	16.5
Sep 29 - Oct 11, 2021	20.9	16.8
Dec 1 - Dec 13, 2021	19.7	15.8
Dec 29 - Jan 10, 2022	20.2	16.2
Jan 26 - Feb 7, 2022	22.0	16.4
Mar 2 - Mar 14, 2022	21.2	15.9
Mar 30 - Apr 11, 2022	20.7	15.2
Apr 27 - May 9, 2022	20.5	15.1
Jun 1 - Jun 13, 2022	24.1	16.7
Jun 29 - Jul 11, 2022	24.2	16.0
Jul 27 - Aug 8, 2022	22.8	15.5

출처 : ISSUE BRIEF(Updated National Survey Trends in Telehealth Utilization and Modality (2021-2022))

38)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Updated National Survey Trends in TelehealthUtilization and Modality (2021-2022))<https://aspe.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7d6b4989431f4c70144f209622975116/household-pulse-survey-telehealth-covid-ib.pdf>



■ 미국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개발된 앱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은 비대면 진료 기업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진료비 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진료 범위 또한 차별화되어 있음
 - Zoom은 일반 통신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COVID-19 이후 32.32%의 시장 점유율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영향력 있는 공급기업으로 부상함
 - Cisco Systems는 네트워킹 제품, 소프트웨어 및 통신 장비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12.0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 Amwell은 11.84%의 시장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으며, Zoom, Cisco와 달리 광범위한 치료에 특화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제공함
 - Doxy.me, Teladoc과 같은 의료 관련 도매기업은 각각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상위 5위를 차지함
 - 이 외에도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들 또한 자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1년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시장 점유율 기준 상위 원격의료 제공기업〉

구분	공급업체	시장점유율
1	Zoom	32.32%
2	Cisco Systems	12.07%
3	Amwell	11.84%
4	Doxy.me	10.68%
5	Teladoc	10.50%
6	Proprietary Software	9.46%
7	Vidyo	9.19%
8	Philips Healthcare	6.50%
9	Polycom	5.84%
10	Microsoft	4.82%

출처 : Definitive Healthcare, Top telehealth companies by market share, 2023.01.16.

〈비대면 진료기업별 비교〉

회사명	장점	가격	처방전발급	보험보장	정신건강 서비스
Sesame Care	서비스 범위	의료전문가별 차이	예	아니오	예
PlushCare	경제성	무보험 및 본인부담금 \$129, 재진료 \$99	예	예	예
Teladoc	비응급 치료	\$0 또는 \$75	예	예	예
MeMD	신속, 간편	보험 없이 \$67부터	예	아니오	예
HealthTap	일관성	멤버십 \$15/연, 보험 없이 \$44부터	예	예	예
Amwell	일반진료	다양한 긴급치료 \$69부터	예	예	예
MDLive	포괄성	긴급치료 \$82부터	예	예	예
Doctor on Demand	의사 선택 가능	\$79부터	예	예	예
LiveHealth Online	맞춤형 치료	\$59부터	예	예	예
Virtuwell	빠른 응답시간	\$59	예	예	예

출처 : Healthline, 10 of the Best Telemedicine Companies, 2023.05.17.



나. 정부 정책 동향

■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³⁹⁾

-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는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법령과 원격의료의 보험 적용에 관한 제도로 구분됨
 - (원격의료 관련 법령)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2016)은 ’16년에 제정된 법률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의료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장벽 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보급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됨
 - * ‘21세기 치료법’: 암과 알츠하이머 등 첨단 생물의학 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DA의 신약 및 의료장비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 (비대면 진료 관련 보험제도) 1996년, 미국은 비대면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7년의 균형 재정법(Balanced Budget Act of 1997)’을 제정하였으며 비대면 진료의 보험 급여를 인정함^{40) 41)}
 - 미국 정부는 Medicare 및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와 활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됨
- 의료 상담은 대면 진료 시에만 가능했으나 ’20년 3월 이후 해당 필수조건은 삭제되었으며, 대면 진료 시에만 가능했던 처방전 발급 관련 사항도 함께 삭제됨
 - 지방에 소재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만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메디케어(Medicare) 원격의료 제한을 완화함
 - 환자와 직접 대면 상담한 이력이 있는 의사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COVID-19 이전의 전제 조건을 완화함

■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조직

- 미국의 비대면 진료는 연방정부와 주 차원 기관에 의해 관리됨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COVID-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 진료의 채택을 늘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함⁴²⁾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평가차관실(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SPE)은 비대면 진료 관련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급여요율, 비대면 진료 도입 및 양상에 관한 전수조사 등 정부 정책 자문을 담당함⁴³⁾

39) mHealth Intelligence, Cures 2.0 Includes Provisions to Expand Telehealth Coverage, Services(2021.06.28.)<https://mhealthintelligence.com/news/cures-2.0-includes-provisions-to-expand-telehealth-coverage-services>

4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인하대학교

41)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2) HHS, Telehealth policy changes after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2023.06.07.)<https://telehealth.hhs.gov/providers/telehealth-policy/policy-changes-after-the-COVID-19-public-health-emergency#temporary-medicare-changes-through-december-3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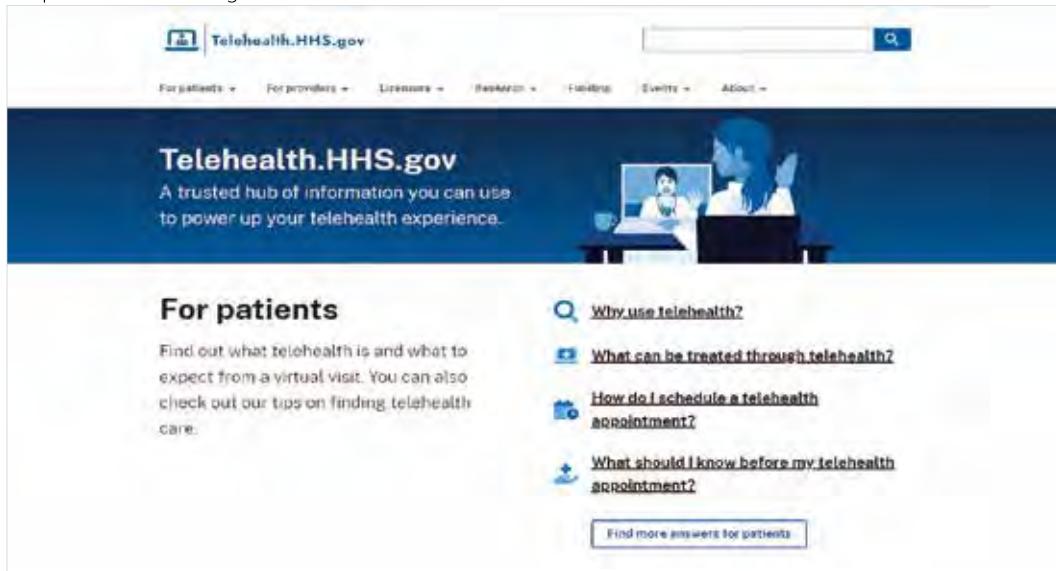
43)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https://aspe.hhs.gov/>



- 보건자원관리국(Health Resource & Service Administration, HRSA)은 ‘Healthy Communities, Healthy People’이라는 비전 아래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⁴⁴⁾

- 보건자원관리국(HRSA)은 Telehealth.HHS.gov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관한 연방정부의 최신 정책과 수가제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함⁴⁵⁾

*<https://telehealth.hhs.gov/>



[그림] Telehealth.HHS.gov 웹사이트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및 추진함⁴⁶⁾
 - 추진된 이니셔티브에는 COVID-19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COVID-19 Telehealth Program), 농어촌 지역의 헬스케어 펀드 증액(Increasing Rural Health Care Funding) 등이 있음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를 제도화하며 급여 요율 등을 세분화함⁴⁷⁾

44) HRSA(About HRSA) <https://www.hrsa.gov/about>

45) Medicare and Medicaid policies <https://telehealth.hhs.gov/providers/telehealth-policy/medicare-and-medicaid-policies>

46) FCC(Connecting Americans to Health Care). <https://www.fcc.gov/connecting-americans-health-care>

47)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ttps://www.cms.gov/about-cms>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발표함⁴⁸⁾

- 의료진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Clinical Outreach and Communication Activity, COCA)' 사이트를 운영함⁴⁹⁾



[그림] Clinical Outreach and Communication Activity (COCA) 사이트

-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의료기기, 의약품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의 기술을 규제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관한 효능,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함⁵⁰⁾
- 미국은 각 주(州, State)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범위, 사용 가능한 기술, 의사 면허 등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규정을 보유함⁵¹⁾

48) CDC(Telehealth Practice Among Health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United States, July 11–17, 2020)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50a4.htm

49) https://emergency.cdc.gov/coca/

50) Telemedicine: Understanding the FDA's role in recent regulatory and enforcement actionshttps://hpm.com/wp-content/uploads/2019/08/00579250.pdf

51) 의료정책연구소, 비대면 진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2022), 89면https://www.medric.or.kr/Uploads/BLibrary/2022-01%20%EC%9B%90%EA%B2%A9%EC%9D%98%EB%A3%8C%20%EC%A0%95%EC%B1%85%20%ED%98%84%ED%99%EA%B3%BC%20%EB%8C%80%EC%9D%91%EB%B0%A9%EC%95%88%20%EC%97%EA%B5%AC_%EC%B5%9C%EC%A2%85.pdf



■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52) 53)

- 미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됨 54)
- (개인정보 보호법)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HIPAA)은 미국에서 개인건강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업체는 HIPA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미국 공중 보건 위기 종식 이후 메디케어 체제의 변화〉

메디케어 원격의료	PHE* 이후 지속여부
• 오디오 기반 정신과 치료 포함	O
• 135건의 추가적 서비스 포함	O
• 원격 모니터링 포함	X
• HIPAA 규정 미준수 앱을 활용한 환자와의 교신	X
• 환자측 치료장소(originating site of care) 관련 요건 철폐	O
• 농촌 지역 소재 환자 관련 요건 철폐	O

출처 : McKinsey, The end of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What's next? , 2023.05.10.

*PHE: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5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telehealth/index.html>

5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privacy/guidance/permitted-uses/index.html>

54) 2014, 김향중, 미국 비대면 진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자격인증/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123면



■ 미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

- 미국 건강보험 체계는 크게 연방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각종 민간 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건강보험 제도마다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의료 수가 체계가 다름⁵⁵⁾
 - 비대면 진료 수가는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COVID-19 이후 수가 적용 질환 항목이 '21년 4월 30일 기준 270개로 증가하였고, 이 중 일부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적용됨
-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각종 민간 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대한 보장범위, 급여요율 등은 보건자원관리국(HRSA)의 Telehealth.HHS.gov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그림] Telehealth.HHS.gov - Billing for telehealth 사이트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의료보험제도	특징
민간의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플랜 • 고용주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와 개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메디케어(Medicare) 1965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운영 •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운영 •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음
메디케이드(Medicaid) 1965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와 각 주가 공동으로 운영 • 각 주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함 • 저소득자, 빈곤층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함
군사보건시스템 (Military Health System, M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운영 •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출처: 北陸経済研究所, アメリカの「療保」制度, 2023.07.⁵⁶⁾

55) Telehealth.HHS.GOV(Billing for telehealth) <https://telehealth.hhs.gov/providers/billing-and-reimbursement>

56) 北陸経済研究所, アメリカの医療保険制度(2023.07.) https://www.hokukei.or.jp/contents/pdf_exl/overseas-news2307.pdf



2. 영국

가. 비대면 진료 관련 현황

■ 영국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배경

- 영국은 인구 고령화, 의료인력 부족,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공공 의료에 대한 지출 증가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함⁵⁷⁾
 -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Medical Doctor)의 수는 '20년 기준 스페인 45.77명, 독일 44.59명, 영국 30.41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영국의 의료인력은 적은 편에 속함⁵⁸⁾
 - 최근 5년('19-'23년) 동안 영국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수는 약 4% 감소한 반면, 환자 수와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⁵⁹⁾
 - '23년 4월 Royal College of GPs(RCG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달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진료 예약을 위해 2주 이상 대기하는 상황임⁶⁰⁾
-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⁶¹⁾

- 영국은 바빌론(Babylon), 푸시닥터(Push Doctor) 등 플랫폼의 규제, 활용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확립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보유함⁶²⁾
- 바빌론(Babylon GP at hand), 푸시닥터(Push Doctor), LIVI 등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환자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등록된 일반의(GP)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음
 - (Babylon Health) 영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의료 스타트업으로, 국가보건서비스(NHS) 보건의(GP)와 연결해 진단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함
 - (Push Doctor) 온라인 화상 상담을 통해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영국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임
 - (LIVI)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영국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임
 - (Doctor Care Anywhere) 비대면 진료와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임

57) LinkedIn(The Role of 'Telemedicine' in Healthcare in the UK: Revolutionising Access to Quality Care)
<https://www.linkedin.com/pulse/role-telemedicine-healthcare-uk-revolutionising-access-board/>

58) WHO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edical-doctors-\(per-10-000-population\)](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edical-doctors-(per-10-000-population))

59) Pharmaphorum, England widens pharmacist role to relieve GP pressure(2023.05.09.)
<https://pharmaphorum.com/news/england-widens-pharmacist-role-relieve-gp-pressure>

60) BBC News(Millions wait more than a fortnight to see a GP in England)
<https://www.bbc.com/news/health-65275367>

61) Love Money, Video GP apps' costs and features of Babylon Health, Push Doctor, Vitality GP, LIVI and Doctor Care Anywhere compared(2019.11.13.)
<https://www.lovemoney.com/guides/90082/video-doctor-appointments-costs-babylon-health-push-doctor-vitality-gp-livi-doctor-care-anywhere>

62) Pharmaceutical Technology, UK found to be most established market for telemedicine among five EU countries(2021.02.23.)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dashboards/surveys-dashboards/uk-found-to-be-most-established-market-for-telemedicine-among-five-eu-countries/>



- (Now Healthcare Group)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배송을 제공하는 영국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임

〈영국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구분	본사	설립연도	직원수	홈페이지
Babylon Health	영국 런던	2013	2,189('21)	www.babylonhealth.com
Push Doctor	영국 맨체스터	2013	100('21)	https://www.pushdoctor.co.uk/
LIVI	스웨덴 스톡홀름	2014	-	https://www.livi.co.uk/
Doctor Care Anywhere	영국	2013	-	https://doctorcareanywhere.com/
Now Healthcare Group	영국 솔포드	2014	-	http://www.nowhealthcaregroup.com/

출처 : 각 기업별 홈페이지

나. 정부 정책

■ 영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 영국 정부는 '19년 1월 NHS 장기계획(Long-term Plan)을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환자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일반의(GP)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⁶³⁾
 - (NHS 111 서비스) NHS는 NHS 111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은 원격으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연결됨
 - (NHS 온라인 서비스) NHS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 처방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음
 - (GP 연결 서비스) 환자들에게 1차 의료 일반의(GP)와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집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64) 65)}
 - '22년,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NHS 앱의 기능을 확장하여 원격 화상 상담을 제공하고 선별 서비스 및 임상 시험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여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을 허용함
 - '22년 말 기준 3,000만 명이 NHS 앱을 사용하기 위해 가입 신청을 하였고, 지난 12개월 동안 170만 명이 NHS 앱을 통해 일반의(GP)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2,200만 명 이상이 재처방을 받은 바 있음
 - NHS 앱을 통해 환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오전 시간대의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함

63) The NHS Long Term Plan
<https://www.longtermplan.nhs.uk/wp-content/uploads/2019/08/nhs-long-term-plan-version-1.2.pdf>

64) Kings Fund, The NHS long-term plan explained(2019.01.23.)<https://www.kingsfund.org.uk/publications/nhs-long-term-plan-explained#primary>

65) Pharmaphorum, NHS App at heart of general practice recovery plans(2023.05.09.)<https://pharmaphorum.com/news/nhs-app-heart-general-practice-recovery-plans>



- 영국 NHS는 환자가 물리치료, 청력검사, 족부의학과 질환 치료 등의 진료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의(GP)와의 진료 없이 약국에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구하는 등 환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HS England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3월까지 앱의 기능(진료 일정 조율, 의료진들 간의 메신저 소통, 재처방전 발급, 환자 건강기록과 검사 결과 열람)을 영국의 일반의(GP) 90% 이상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영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조직 (66) (67)

- 영국의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가보건서비스(NHS) 및 관련 기관에 의해 관리됨
 - 비대면 진료의 제공범위는 각 지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산하 임상위임위원회(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와 지방행정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Health and Wellbeing Board)에서 결정하고, 제공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각 지역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 (68) (69)
 - 임상위임위원회(CCG)는 영국의 각 지역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제공하기 위해 '12년 보건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지만, '22년 7월 1일에 '보건의료법 2022(Health and Care Act(2022))'에 의해 폐지되고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으로 대체됨 (70) (71)

■ 영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 영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는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 면허 및 등록 의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함 (72)(73) (74)
 - 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2016)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GDPR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75)
- 영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와 인증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기관인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CQC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함 (76)

66) DLA PIPER(Telehealth Costs)<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telehealth/countries/index.html?t=04-costs-of-telehealth&c=GB>

67) NHS England. <https://www.england.nhs.uk/tecs/>

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모델과 시사점(2016.05.)<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6059/1/2016.05%20No.235.10.pdf>

69) NHS England. <https://transform.england.nhs.uk/key-tools-and-info/digital-playbooks/respiratory-digital-playbook/a-telehealth-system-using-text-messages/>

70) 의협신문,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 통합의료시스템(ICSs)(2023.01.14.)<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19>

71) NHS England(Supporting information for ICS leads. Enablers for success: virtual wards including hospital at home)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22/04/B1382_supporting-information-for-integrated-care-system-leads_enablers-for-success_virtual-wards-including-hos.pdf

72) DLA PIPER(Telehealth Regulation)<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telehealth/countries/index.html?t=02-regulation-of-telehealth&c=GB>

73) Morgan Lewis(TELEHEALTH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TIONS FOR PROVIDERS)<https://www.morganlewis.com/pubs/2021/02/telehealth-in-the-united-kingdom-considerations-for-providers-cv19-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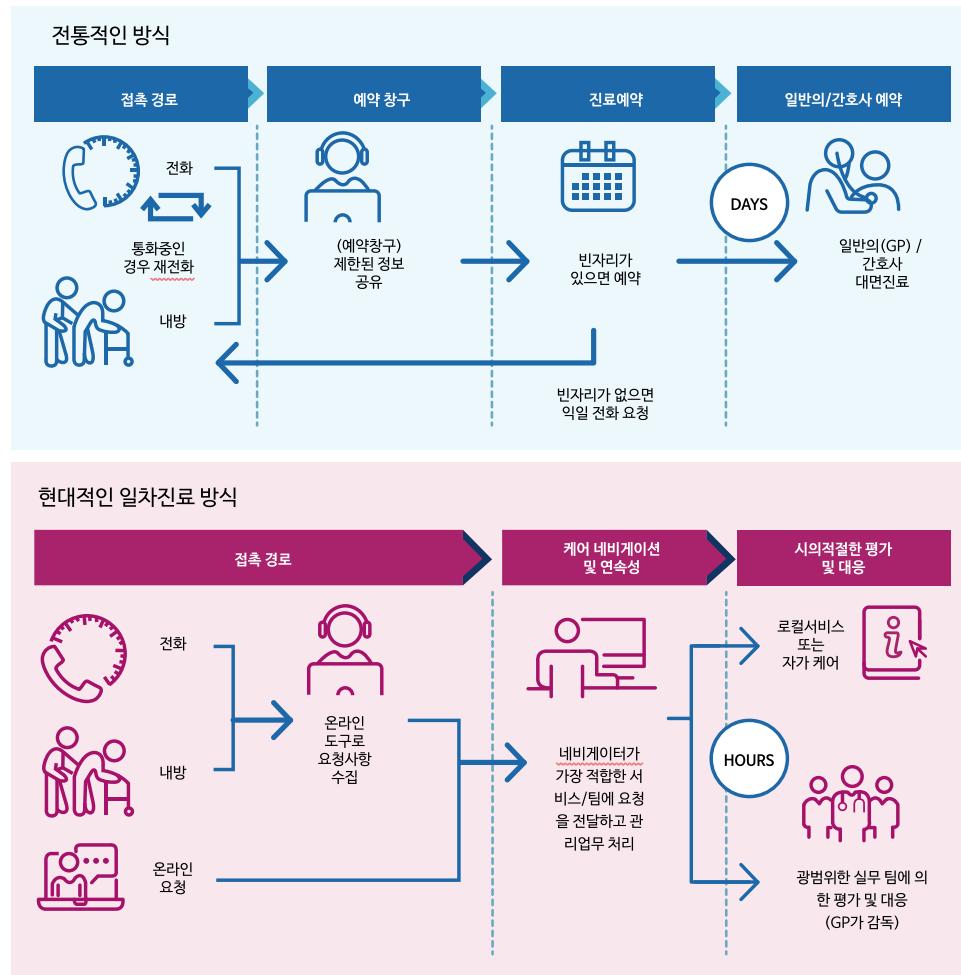
74) Lexology(Future of digital health law: UK perspective on telemedicine)<https://www.lexology.com/commentary/healthcare-life-sciences/european-union/eversheds-sutherland-intl-llp/future-of-digital-health-law-uk-perspective-on-telemedicine>

75) Morgan Lewis(TELEHEALTH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TIONS FOR PROVIDERS)<https://www.morganlewis.com/pubs/2021/02/telehealth-in-the-united-kingdom-considerations-for-providers-cv19-lf>

76) Taylor Wessing(Issues with regulation of telemedicine in the UK)<https://www.taylorwessing.com/en/insights-and-events/insights/2022/06/issues-with-regulation-of-telemedicine-in-the-uk>



〈영국의 1차 진료 방식의 변화〉



출처 : Department of Heath & Social Care, Delivery plan for recovering access to primary care, 2023.05. ⁷⁷⁾

■ 영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 ⁷⁸⁾

- ◉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비가 부여되지 않으며, 환자들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의(GP)는 등록된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함
 - 수가는 영국 NHS 측과 국가표준 계약에 해당하는 GMS(General Medical Service) 계약에 따라 인두제(Capitation)로 받는 구조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거의 동일함

77) Department of Heath & Social Care, Delivery plan for recovering access to primary care(2023.05.)<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23/05/PRN00283-delivery-plan-for-recovering-access-to-primary-care-may-2023.pdf>

78)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2022.04.)



3. 일본

가. 비대면 진료 관련 현황

■ 일본의 비대면 진료 정의^{79) 80)}

- 비대면 진료의 발전과 함께 일본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의는 지속 변화되어 왔으며, 국가 의료 규제기관의 정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96년,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 조직인 ‘원격 의료 연구반(遠隔医療研究班)’이 발족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영상을 포함한 환자 정보 전송을 통해 원격지에서 진단, 지시 등 의료에 관한 행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일본은 ‘원격의료(遠隔医療)’와 ‘온라인 진료(オンライン診療)’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으나, ’18년 후생노동성에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면서 사용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용어가 ‘온라인진료(オンライン診療)’로 통용됨
- ’22년 2월, 후생노동성에서 공표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판에서는 온라인 진료를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 및 진단하고, 진단 결과의 전달이나 처방 등의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함
 - 해당 지침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유형을 온라인 진료, 온라인 진찰 권장, 원격 건강의료 상담으로 구분함
 - 온라인 진찰 권장은 원격의료 중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권장을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임
 - 원격 건강의료 상담은 의사와 상담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임

79) 一般社団法人 日本遠隔医療学会, 図説:日本の遠隔医療(2017.12.01.)
一般社団法人 日本遠隔医療学会, 「日本遠隔医療学会の会員登録について」(2017.12.01.)
http://jta.umin.jp/pdf/telemedicine/telemedicine_in_japan_20171201_jp.pdf

80)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https://www.mhlw.go.jp/stf/seisaku-attach/12601000/000901835.pdf>



■ 일본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배경^{81) 82) 83)}

- 일본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COVID-19 감염병 확산, 의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시작함
 - 1997년,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별 의료자원 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수가 제도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함
 -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0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 중임
 - 일본 내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를 설치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⁸⁴⁾
 -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전자의무기록의 통합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수립하고 있음

■ 일본의 비대면 진료 시장

-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일본에서는 진단부터 상담, 복약지도까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출시되어 활용 중임
 - 일본은 '21년 8월 '온라인 진료 특례조치 항구화'를 공표했으며, '22년도에 초진의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온라인 초·재진 수가가 정식 도입됐으며 의약품 배송도 허용됨^{85) 86)}
 - 처방 의약품 배송은 지난 '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며, COVID-19를 계기로 온라인 복약지도⁸⁷⁾가 전면 확대됨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환자 상담, 병리진단, 복약지도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81)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82) ETRI(일본 원격의료 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https://ksp.etri.re.kr/ksp/plan-report/file?id=796>

8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2022.11.)
file:///C:/Users/82104/Desktop/2022-02+%EC%9D%BC%EB%B3%B4-%EC%9B%90%EA%B2%A9%EC%9D%98%EB%A3%8C+%EC%A0%95%EC%B1%85+%ED%98%84%ED%99%A9%EA%B3%BC+%EC%8B%9C%EC%82%AC%EC%A0%90_%EC%B5%9C%EC%A2%85.pdf

84)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일본의 코로나19 대응실태와 향후전망)<https://www.inss.re.kr/common/download.do?atchFileId=F80044&fileSn=0>

85)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86) 청년의사(멤버거 카드 결제보다 약 배달 제도화가 더 빠른 일본)<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191>

87) 온라인 복약지도는 처방전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배송까지 포함된 모든 과정을 지칭



■ 일본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⁸⁸

- 일본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추세임
 -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 이용료 등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환자는 진료 후 본인부담금만 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임
 - 일본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Clinics △Curon △라인(LINE) 닥터앱 △ORSO-Logmoni △Pocket Doctor △YaDoc 등이 있음

〈일본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구분	주요 내용	홈페이지
Clin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병·의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과 특정기능병원의 온라인 진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앱임 일본 민간기업 '메들리(MEDLEY)'가 개발했으며, '16년 2월부터 앱 서비스를 개시함 	https://clinics-app.com/
Cu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uron에서는 '스위치(Switch) OTC' 구매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스위치 OTC는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으로 전환된지 얼마 안된 의약품으로, 구매 전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야 함 	https://app.curon.co/
Line Do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일본 기업 M3와 합작법인 '라인 헬스케어'를 설립하고 '20년 12월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함 	https://doctor.line.me/
ORSO-Logm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A, NTT, 흐카이도지자체, 주식회사ORSO의 공동 개발 앱 비대면 친찰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료 및 처방을 진행하고, 드론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임 	https://www.logmoni.jp/
Pocket Do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가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빨간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빨간펜' 기능을 특허로 등록해 의사와 환자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 의사가 환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전자 카르텔에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함 	https://www.pocketdoctor.jp/
Ya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인테그리티 헬스케어가 개발한 온라인 질환 관리 시스템으로, 통상의 대면 진료에 온라인 모니터링 및 문진을 추가하는 방식임 건강의료기기와 연계할 수 있어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걸음 수, 소비 열량 등을 기록할 수 있음 환자는 질환별로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 가능함 	https://www.yadoc.jp/

출처 : 의료정책연구소⁸⁹⁾, Biowatch⁹⁰⁾, KOTRA⁹¹⁾, 각사 홈페이지

88) 청년의사, 일본, 진료에 약 배달까지 원격으로…플랫폼 다양화(2022.11.29.)<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794>

89)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2022.04.)https://www.medric.or.kr/Uploads/BLibrary/2022-01%20%EC%9B%90%EA%B2%A9%EC%9D%98%EB%A3%8C%20%EC%A0%95%EC%B1%85%20%ED%98%84%ED%99%A9%EA%B3%BC%20%EB%8C%80%EC%9D%91%EB%B0%A9%EC%95%88%20%EC%97%97%EB%AC_%EC%85%9C%EC%A2%85.pdf

90) Biowatch, 안방에서 초진부터...원격의료 전면 개방 日 의료는?(2023.01.08.) <https://kormedi.com/1543067/%EC%B4%88%EC%A7%84%EB%B6%80%ED%84%BC-%EC%A7%91%EC%97%90%EC%84%9C-%EC%98%A8%EB%9D%BC%EC%9D%B8-%EC%A0%84%EB%A9%BC%EA%B0%9C%EB%B0%A9-E6%97%A5-%EC%9D%98%EB%A3%8C%EB%8A%94/>

91) KOTRA,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2020.05.1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o=244&bbsSn=244&pNttsSn=181986



나. 정부 정책 동향

■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⁹²⁾

- 일본은 1997년 지진 등 재해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도서산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처음 도입함
 - 비대면 진료에 관하여 총무성에서 발간한 ‘원격의료모델 참고서:온라인 진료판’ 내지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함
 - 일본에서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는 의사법(医師法 1948, 2019 개정) 제20조⁹³⁾ 의사가 시행한 ‘직접 진찰’에 해당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하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적 있음
 - ’18년 3월 후생노동성이 공포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는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법 제20조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무 진찰 진료’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
 - ’18년,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대상은 6개월 이상 같은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나 최근 1년간 6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22년 2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는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
 - 일본 의료법(医療法 1948, 2023 개정)⁹⁴⁾ 제1조에 따르면, 의료제공시설에는 국민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초로 의료를 제공받는 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병원, 진료소, 개호노인보건시설, 조제약국 및 기타의료를 제공하는 시설과 더불어 의료를 제공 받는 사람의 자택도 포함함
 - 동 조항에서는 의료 제공 시설의 기능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제공 시설로 자택 등 후생노동성령에서 지정한 장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진료 제공 장소를 명시함

92)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93) 일본의 의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 출산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본인이 검안하지 않고 검안서를 교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진찰 진료의 금지’를 선언함<https://hourei.net/law/323AC0000000201>

94)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3AC0000000205>



〈일본의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연도	추진기관	주요 내용
’18년 3월	후생노동성	•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을 발표
’18년 6월	일본 의사회	•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진료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서 (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療に関する検討委員会)를 발표
’20년 4월	후생노동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한시적·특례적 취급’을 결정해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21년 8월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	• COVID-19의 일본 내 확산이 심화되면서 온라인 진료의 적정성 및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 특례 조치의 항구화’를 공표
’22년 2월	후생노동성	•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의 개정판 발표

출처 : 한국소비자원,⁹⁵⁾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⁹⁶⁾ 후생노동성⁹⁷⁾

■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조직 98)

◎ 일본의 비대면 진료는 내각부,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에 의해 관련 정책이 수립되며 관리·규제됨

- (내각부)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는 소사이어티 5.0,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정보화 실시 지침 등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상위 정책을 수립함^{99) 100)}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비대면 진료 정책 초기 단계부터 비대면 진료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원격의료 연구반’ 설립,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¹⁰¹⁾’ 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설계와 시행을 담당함¹⁰²⁾
- (총무성)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 보급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기술 제공 및 유용성 검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의료연구개발기구) 일본의 의료연구개발기구(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는 ’15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의료분야 ICT R&D를 담당함¹⁰³⁾

95) 한국소비자원, 의료소비자 관점의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비교 연구(2018.)

96) 社会保障審議会医療部会, オンライン診療の特例措置の恒久化について(2021.08.05.)<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816004.pdf>

97)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98) 한국소비자원, 의료소비자 관점의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비교 연구(2018.)

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30000&bid=0001&list_no=10247&act=view

100) Japan Cabinet Office. <https://www.cao.go.jp/>

101)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102)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Current status of telemedicine in Japan: implications for Korea)
<https://jkma.org/journal/view.php?number=3397&viewtype=pubreader>

10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2019년 R&D 예산, 2019.2.21.)



■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104) 105)}

- 일본의 비대면 진료 규제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초진을 통한 의약품 처방 시 '온라인 초진 진료의 투여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 등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권장함
 -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의 처방은 금지되어 있으며, 기초 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최대 7일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함¹⁰⁶⁾
 - (의사 면허와 면허 허가) 일본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기업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가받은 면허의 획득이 필요함
- 일본의 비대면 진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와 기밀을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03)¹⁰⁷⁾ 제2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유실·손실 방지 및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안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 관련 사항을 전체 또는 일부 위탁할 경우, 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함

104) オンライン診療に関するホームペー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rinsyo/index_00010.html

105)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https://www.pmda.go.jp/english/>

106) 厚生労働省, 온라인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107) <https://elaws.e-government.go.jp/document?lawid=415AC00000000057>



■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¹⁰⁸⁾

- 일본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18년 수가 개정 당시 신설되었으며, 초진의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됨
 - ’20년 의료 수가 개정 과정에서 ‘COVID-19에 따른 한시적 특례’로서 온라인 진료가 추가됨
 - ’22년 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비대면 진료비’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관한 온라인 초진·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함
 - 정식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진료비’ 초진 수가가 신설됨
 - ’22년 4월부터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진료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비’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비 수가를 추가 신설함
 - 해당 수가가 신설된 이유는 ’22년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환자가 부득이하게 동네 병·의원 단골의사(가카리츠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 * 가카리츠케 의사(かかりつけ医):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상담하고 일상적인 진료나 초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가정의, 동네의사, 지역의사
- 온라인 초·재진 환자에 대한 수가 산정 요건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초·재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수가 산정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진료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 또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됨

108) 厚生労働省, 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2022.02.28.)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2022.02.28.)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01835.pdf>;



4. 중국

가. 비대면 진료 관련 현황

■ 중국의 비대면 진료 정의¹⁰⁹⁾

- 중국은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遠距醫療)’ 또는 ‘온라인 진료(網路診療)’라는 용어로 표기함
- 비대면 진료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일부 질환의 치료와 만성질환의 재진찰 등을 수행하는 것을 지칭함
 - 비대면 진료는 원격자문,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원격자문) 의료인이 원거리에 있는 의료인에게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원격진료) 의사-환자 간 비대면으로 진단, 처방전 발행 등의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원격수술) 인터넷 통신 기술을 활용해 A병원 의사가 B병원 환자 수술에 원격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는 등 원거리에서의 수술 지원 활동을 의미함
 - (원격모니터링) 병원 외부의 디지털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분석, 상담, 교육 등의 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배경¹¹⁰⁾

- 지방 중소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지역 간의 의료자원 편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비대면 진료가 언급되기 시작함
 -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 관련 기술과 제도를 꾸준히 육성해 온 중국은 COVID-19 이후 원격의료의 추진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
- ’20년, 중국 정부는 COVID-19 발생 초기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후베이성 방역 강화 추진 공지’를 발표하며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함¹¹¹⁾
- 중국 중앙정부는 원격의료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등 장기 발전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을 포함하였고, 지방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원격의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원격의료를 적극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¹¹²⁾
- 중국은 지속적인 원격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환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원격의료의 신산업 육성 기회로 개척하고 있음

109) AllBright, 新法解读|《互联网诊疗管理办法 (试行)》之核心内容及落地障碍(2018.09.20.)<https://www.allbrightlaw.com/CN/10475/52c61aca14b56ef0.aspx>

110) National Library of Medicine(Telemedicin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opular Way to Resolve the Unequal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Evidence From China)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9301261/>

111) 卫生健康委网站, 关于开展线上服务进一步加强湖北疫情防控工作的通知(2020.02.27.)
https://www.gov.cn/xinwen/2020-02/27/content_5483977.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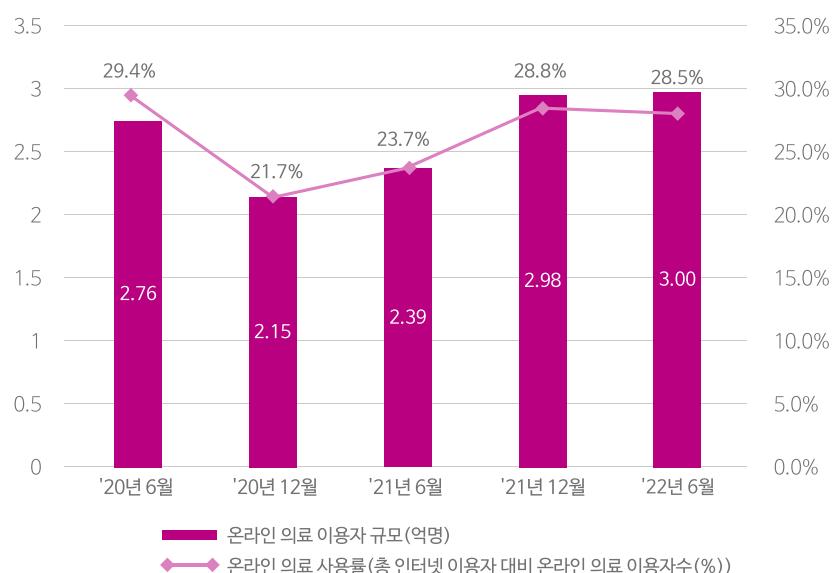
11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2020.11.03)
https://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



■ 중국의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 113) 114)

-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며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6년('15-'20년) 만에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8.5배 성장해 '21년 346.9억 위안(한화 약 6조 7,570억 원)을 달성함
 - 비대면 진료 이용자 또한 '14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20년 기준 약 6.5억 명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임
 - '22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 설립된 온라인병원 수는 2,700개 이상이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성 및 도시의 비대면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중국 온라인 의료 이용자 규모 및 사용률 변화 추이〉



출처 : 動脈網, 《2022互联网医院報告》發佈: 創新醫療品量建設 · 促進行業進入服務收費時代, 2022.11.15.

■ 중국의 온라인병원 개요 115)

- 중국은 '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國家衛生計生委關於推進醫療機構遠程醫療服務的意見)'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온라인병원'을 개소함
 - 온라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문진, 자문, 진료,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하며 미국, 영국, 일본의 비대면 진료(Telemedicine) 개념과 유사함
 - 온라인병원은 일부 흔한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재진만 가능하며, 초진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함

113) 动脉网, 《2022互联网医院报告》发布: 创新医疗质量建设, 促进行业进入服务收费时代(2022.11.15.)<https://www.vbdata.cn/1518881918>

114)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2022.08.29.)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576&category=ST

115) 한국무역협회,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2019.06.21.)<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48369>



- ◉ '14년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해 최초의 온라인병원을 설립함¹¹⁶⁾
 - 환자는 온라인으로 제2인민병원의 의사를 직접 선택해 실시간 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처방 의약품 배송, 각종 검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 중국은 온라인병원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의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관련 근거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원격 의료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關於推進醫療機構遠程醫療服務的意見, '14년), 온라인 병원 관리방법(互聯網醫院管理辦法, '18년),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互聯網診療管理辦法, '18년),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遠程醫療服務管理規範, '18년)이 있음

■ 중국의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¹¹⁷⁾

- ◉ 보건의료용품 판매, 보험업, 의료기관 진료 알선,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해오던 중국의 인터넷 의료서비스 기업들은 '18년 4월 중국 정부가 온라인병원 운영을 허가한 것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온라인 병원)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함
 -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의료진 등급 제공 및 진료 알선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사의 e-처방전 발급과 후속(follow-up) 진료를 허용함
- ◉ 중국 헬스케어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리헬스(AliHealth), 평안굿닥터(Ping An Good Doctor) 등이 있음
 - 알리헬스는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가 보유한 쇼핑몰인 '티몰(Tmall.com)'의 보건의료용품 부문과 건강보조식품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자사의 유통채널을 활용한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을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음
 - 평안굿닥터는 중국의 대규모 보험사 평안보험의 IT 자회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체 의료인력을 보유해 온라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글로벌 확장성을 넓히고 있음
 - 비대면 진료 시장을 열어준 중국 정부의 정책과 모회사의 탄탄한 기반이 두 기업 모두에게 기회로 작용함
 - 징동, 알리바바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요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1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국의 스마트의료와 우리의 스마트의료 시장 진출(2019.08.20.)
https://www.bioin.or.kr/board.do?sessionid=0C477077459B25A883909048CBB53C0C?num=289600&cmd=view&bid=tech&cPage=3&cate1=all&cate2=all2&s_str=&sdate=&edate=%22onclick

117) 보건사회연구,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2020.11.17.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6802/1/보건사회연구.2020.V040.N04_21pdf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기업〉

회사명	주요 내용
징동젠강(京東健康) https://health.jd.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6년 징동(京东)그룹은 의약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발전함 • '16년 징동그룹은 안지당(安吉堂)약국을 인수하며 온라인 약국인 '징동따야오팡'(京东大药房)을 개시함 • '17년, 징동그룹은 온라인병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년 징동 온라인병원 운영모드로 계획된 오프라인 병원을 착공함 • '20년 징동젠강(京东健康) 앱을 출시함
알리젠강(阿里健康) https://www.alihealth.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6년 알리젠강(阿里健康)은 티몰(TMALL)에 입점해 의약품 온라인 판매업무를 시작함 • '17년 티몰에 있는 국가식품안전국의 인증을 받은 보건 식품 관련 사업을 인수해 보건 식품 판매를 시작함 • '19년 후베이성에서 '인터넷+알리페이' 방식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며 '20년 티몰에서 의약품 판매 관련 사업을 인수함
평안하오이성 (平安好医生) https://www.pagd.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굿닥터는 '14년 중국 최대 보험회사인 평안그룹이 상하이에서 설립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기업으로서, 현재 1,800여 명의 의료 전문팀과 1만 명 이상의 의사들과 제휴해 온라인 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등록 사용자는 3.5억 명이며, 유료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함

출처 : KITA, 중국 온라인 의료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21.04.12.

나. 정부 정책 동향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¹¹⁸⁾

- ◉ 중국은 지난 '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18년에는 비대면 진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19년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함
 - '14년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NHFPC)에서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 (国家衛生計生委關於推進醫療機構遠程醫療服務的意見)'을 발표함¹¹⁹⁾
 -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짐

118)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2022.08.29.)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576&category=ST

119) 卫生计生委, 卫生计生委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2014.08.21.



〈 원격의료 관련 중국 중앙·지방 정부 정책 〉

정부	원격의료 관련 정책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 개념 수립,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 '14) 의료기관들의 원격의료 관련 사업 확대 독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18) 의료기구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 허용, 약국 온라인 의약품 판매 허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조치, '19)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후베이성 코로나 방역 강화 추진 공지('20) 국가 장기 발전전략에 원격의료 산업 육성 포함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차 5개년 규획 요강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비전 요강, '21)
지방정부	닝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 네트워크 장비 보급 가속, 감염병 예방통제 스마트 무인 시스템 보급, 원격의료·원격교육 농촌 활용 보급 추진, 자치구 내 병원 간 순회의료와 원격의료 메커니즘 구축
	푸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온라인 교육·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의 폭넓은 활용 추진
	쓰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병원과 군 병원의 순회의료와 원격의료 지원
장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병원 구축,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상급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 간 온라인 의료서비스 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상 온라인 가정주치의, '의료 인공지능 영상진단 플랫폼, 전공의 보조 진료 플랫폼,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모색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건강 의료 빅데이터 서부센터·인터넷병원 건립 추진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2022.08.29.

-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18년 4월에 발표한 '인터넷+의료서비스(Internet+ Medical Services)'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18년 7월에 공표하며 시범운영에 돌입함^{120) 121)}
 - <온라인 진료 관리 방법>, <온라인 병원 관리 방법>,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규범> 등 3가지 기준을 발표함
 - '20년, COVID-19의 여파로 대면 진단 및 치료 채널이 차단되고 의료자원 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온라인 병원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발표함
 - 중국 정부 통계국에 따르면 '20년 2월 중국 전체의 의료 및 보건 기관 방문 횟수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19년 대비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0) Deloitte, 中国互联网医院：数字医疗迈向新阶段(2021.03.16.)<https://www2.deloitte.com/cn/zh/pages/life-sciences-and-healthcare/articles/internet-hospitals-in-china-the-new-step-into-digital-healthcare.html>

121)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8485192/>



〈온라인 병원 관련 규정〉

연월	규정	내용
2016년 10월	건강중국 2030 규획강요 (健康中国2030規劃綱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의료산업의 발전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인터넷+” 의료서비스를 발표함
2018년 4월	‘인터넷+의료건강’ 촉진에 관한 발전 의견 (關於促進“互联网+醫療健康”發展的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의료와 관련된 정책적·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의료기관이 ICT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합법성과 스마트병원의 구성형식 및 업무 범위를 확정함
201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互聯網 診療管辦法) - 온라인 병원 관리방법 (互聯網醫院管理辦法) -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 (遠程醫療服務管理規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 등 온라인을 통한 진료의 개념과 기준을 설정함 온라인병원 설립 방법, 업무 범위, 규범 등을 제시함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2019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華人民共和國藥品管理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한 처방 의약품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2019년 9월	“인터넷+” 의료서비스 수가 및 의료보험료정책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完善“互联网+”醫療服務價格和医保支付政策的指導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료 납부 방침을 명확화함
2020년 3월	COVID-19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인터넷+”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관한 지침 의견 (關於推進新冠肺炎疫情防控期間開展“互联网+”医保服務的指導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소매 약국에서 처방전 직접 결제를 명확하게 추진하고 인터넷 의료보험을 공식 시행함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온라인 재진 서비스는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함
2020년 3월	의료보장제도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 (關於深化醫療保障制度改革的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모델의 혁신적 발전, 인터넷 의료기관에 전자처방전, 의료비 및 약제비를 온라인 의료보험에서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20년 9월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과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소비 유형의 가속화된 발전을 주도하는 데 관한 의견 (關於以新业态新模式引領新型消費加快发展的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다양한 유형의 소비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육성하고 확장시킴 인터넷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예약진료, 온라인진료, 전자처방유통, 의약품 온라인판매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함
2020년 11월	국가의료보장국의 “인터넷+” 의료서비스 및 의료 보험급여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國家醫療保障局關於積極推動“互联网+醫療服務醫保支付工作的指導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병원의 일반 외래진료 항목 가격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규정에 맞는 “인터넷+” 의료 재진 서비스를 제공함 의약품비는 오프라인 의료보험에 규정된 지급기준 및 정책에 따라 지급함

출처 : Deloitte, 中國互聯網醫院：數位醫療邁向新階段, 2021.03.16.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조직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衛生健康委員會,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NHC)¹²²⁾에서 중국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藥品監督管理局,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등의 규제기관에 의해 관리됨
 - 이들 기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인가, 의료전문가의 자격, 기술적인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독하고 규제함
 - (의료 면허 및 자격) 중국에서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의료 면허를 보유해야 함
 - (인가 및 등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범위, 기술 요구사항, 환자 기밀 보호 등이 포함됨
 - (개인정보 보호) 중국의 비대면 진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데이터 보호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기밀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互聯網診療管理辦法) 제16조에 따르면,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음^{123) 124)}
- 온라인 진료 감독관리세칙(互聯網診療監管細則試行) 제18조에 따르면, 환자는 진찰을 받을 때 외래의무기록, 입원의무기록, 퇴원요약지, 진단서 등 진단이 명확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재진 방문을 위한 조건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함¹²⁵⁾
 -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단 및 치료의 중단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가 변하여 기타 비대면 진단 및 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즉시 비대면 진단 및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야 함

122) 国家卫生健康委员会 홈페이지: <http://www.nhc.gov.cn/>;
国家药品监督管理局 홈페이지: <https://www.nmpa.gov.cn/>

123) 한국무역협회,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2019.06.21.)<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48369>

124) 国务院办公厅, 卫生健康委 中医药局关于印发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等3个文件的通知(2018.07.17.)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9/content_5358684.htm

125) 医政医管局, 关于印发互联网诊疗监管细则（试行）的通知(2022.03.15.) <http://www.nhc.gov.cn/zyyj/s3594q/202203/fa87807fa6e1411e9afeb82a4211f287.shtml>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126) 127) 128)}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지역별·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의사의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비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대면진료 형태(사진을 통한 진단, 실시간 음성 진료, 실시간 영상 진료)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됨
 - '14년 1월, 청다오시 정부는 11개의 시범 병원을 지정해 의료보험의 범위에 비대면 진료 비용을 포함하여 시간당 진료 비용을 150위안(약 20달러)으로 책정함¹²⁹⁾
 - 광동성이나 저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280~400위안(약 39~55달러)으로 규정하고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126) National Library of Medicine(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elemedicine in China: Cross-Sectional Study)<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647817/>

127) CMS(DIGITAL HEALTH APPS AND TELEMEDICINE IN CHINA)<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digital-health-apps-and-telemedicine/china>

128) Deloitte(Internet Hospitals in China: The new step into digital healthcare)<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n/Documents/life-sciences-health-care/deloitte-cn-lshc-internet-hospitals-in-china-the-new-step-into-digital-healthcare-en-210315.pdf>

129) 2021, 김경진, 한국과 중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 비교 연구, 중국지역연구 통권 18호, 196면



IV

전망 및 시사점

-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전달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며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130) 131)}
-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은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추세임
 - 미국은 △비대면 진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유지 △민간 기업의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 등 적극적으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상용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132) 133)}
 - 영국은 NHS 앱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의 비대면 진료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됨¹³⁴⁾
 - 일본은 온라인 초·재진 수가를 정식 도입하고 의약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온라인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도시의 대형병원과 농촌의 지방병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진료 기반 시설 구축 △환자의 진료기록을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마련 △전문 인재 양성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비대면 진료는 다방면의 유망 사업들과 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¹³⁵⁾

130) OECD(The future of telemedicine after COVID-19)<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he-future-of-telemedicine-after-covid-19-d46e9a02/>

131) 데일리메디(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비대면 진료' 대세)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9797

132) American Medical Association(How telehealth's future came into clearer view in 2023)<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digital/how-telehealth-s-future-came-clearer-view-2023>

133) LinkedIn(The Future Of Telemedicine: Pioneering A New Era Of Virtual Care)https://www.linkedin.com/pulse/future-telemedicine-pioneering-new-era-virtual-care-a2hae/?trk=public_post

134) NHS England(Technology Enabled Care Services (TECS))<https://www.england.nhs.uk/tecs/>

135) Devabit(7 TELEMEDICINE TRENDS THAT BUILD THE FUTURE OF TELEMEDICINE)<https://devabit.com/blog/7-telemedicine-trends-that-build-the-future-of-telemedicine/>



- ◎ 집필자 :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시장분석팀 한미선, 이가영, 박진영
- ◎ 문의 : 043-713-8924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 (<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